



제 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34호)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35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법률안의 취지 및 구성	7
1. 법률안의 입법 배경	7
2.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10
3.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2
4. 제정안의 총괄적 검토	14
IV. 주요 조문별 검토	20
1. 목적규정	20
2. 정의규정	22
3. 임도사업계획 등의 수립	26
4. 임도의 타당성평가	29
5. 토지 등의 수용·사용	33
6. 임도에서의 행위제한	36
7. 임도사업의 국제협력 및 기술개발 등	38
8. 한국임도협회의 설립	40
9. 벌칙	43
10. 부칙	46

I. 제안경위

1. 윤준병의원안(2207234)

가.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1. 6.

다. 회 부 일 : 2025. 1. 7.

2. 윤준병의원안(2207235)

가.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1. 6.

다. 회 부 일 : 2025. 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윤준병의원안(2207234)

제안이유

산림은 국내 온실가스의 최대 흡수원으로서 나무심기, 숲가꾸기와 같은 순환경영으로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산림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의 설치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산불 등 산림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임도가 사유림 편입부지 산주의 부동의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도의 기능을 제때 구현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도의 계획제도를 정비하고 임도 설치 전 시행하는 타당성 평가와 임도 설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임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임도설치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안전진단 및 사후조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도의 설치·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개설된 임도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람의 통행 및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임도사업 정보의 수집·분석, 민간 협력, 제도 연구 및 개선, 교육 및 홍보 등 체계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관련 협회의 설립 근거 마련과 임도 관련 기술연구·국제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도기술을 발전시키고 임도의 파손·피해를

입힌 경우에 벌칙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하여 임도의 보호와 산림 경영 이용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국가 등의 책무, 적용 범위, 임도의 종류·시설 기준, 임도의 관할 행정청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임도계획제도를 국가임도종합계획 및 임도사업계획으로 상향 입법 및 변경하고, 임도의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다. 임도노선 선정시 고려사항과 타당성평가 실시 및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임도 노선 지정 및 고시와 사유림 소유자의 민간 임도 설치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라. 임도 노선 지정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사항과 임도 노선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마. 임도의 설계 기준에 따라 임도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임도를 설치 토록 하고, 임도 관할 행정청의 장과 협의 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 받아 임도의 관리 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바. 임도설치 담당공무원 등이 업무추진을 위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하고, 임도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의 손실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사. 임도 유지·보수 주체와 임도관리 대장의 작성·보관 및 임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임도 안내판 등의 표시 사항을 마련함(안 제21조 부터 제23조까지).
- 아. 임도의 파손 및 산림의 보호·관리에 필요할 경우에는 통행의 금지 및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임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제한을 규정함(안 제24조 및 제25조).
- 자. 임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통행하거나 임도의 효용을 떨어뜨린 자에게 임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26조 및 제27조).
- 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도사업에 대해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의 목적 외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반환 규정과 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 카. 임도사업의 국제협력 및 기술개발과 임도분야의 발전을 위해 임도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 및 제32조).

다. 산림청장 등의 권한의 위임과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사항을 규정함(안 제33조 및 제34조).

파. 임도 통행을 방해한 자, 임도를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힌 자 등에 대한 벌칙과 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2. 윤준병의원안(2207235)

임도(林道)는 도시민의 산림휴양 및 산촌의 생활환경 개선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시설로써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산림기반시설임.

특히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산림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의 설치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더해,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산불 등 산림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임도가 사유림 편입부지 산주의 부동의으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도의 공익적 기능을 제때 구현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도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에 있어 현행법과의 체계 및 조문을 정비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2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법률안의 취지 및 구성

1. 법률안의 입법 배경

우리나라는 산림이 전 국토의 63%인 630만ha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 중 매우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산림은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발현할 수 있는 국가의 중요한 자원 요소임.

그러나 산림이 국가의 중요 자원이라고 하더라도, 산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산림자원의 활용률을 향상시키며 체계적인 보호를 할 수 있는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¹⁾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자원으로 활용될 수 없으므로 기반시설인 임도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는 우리나라 산림의 경영과 관리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임도는 산림경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그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① 산림 접근성 개선과 임업기계화 향상을 통해 목재의 안정적 공급 및 임산물의 생산을 증진하여 임업인의 소득을 증진하고, ②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대형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산림재해에 대한 신속 대응과 산림보호 역량 강화에 기여하며, ③ 농·산촌 지역 간 연결을 통해 산촌주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며, ④ 그 밖에 산림휴양 등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것 등이 있음.

1) “임도(林道)”의 개념: 산림자원의 경영·관리·보호를 위한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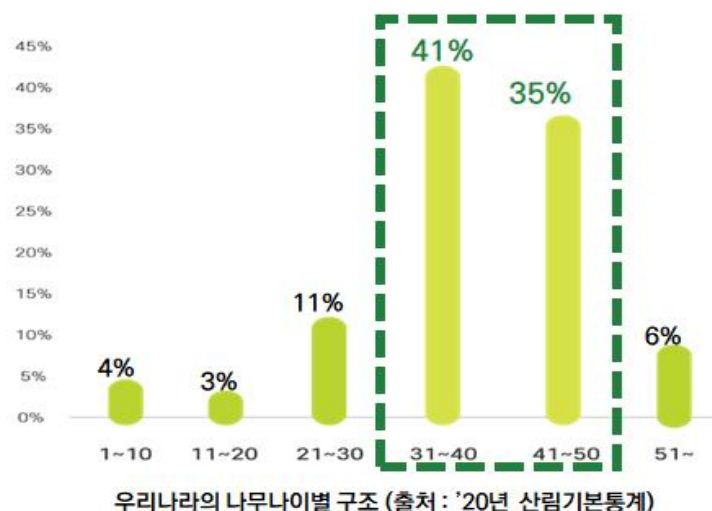
- 도로(길)는 접근, 이동, 연결 기능이 있으며, 임도는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공익적 활동을 위한 접근, 이동, 연결 기능을 수행(임도는 도로와 달리 개설 후에도 지목 변경 없이 산림으로 관리)

산불진화를 위한 임도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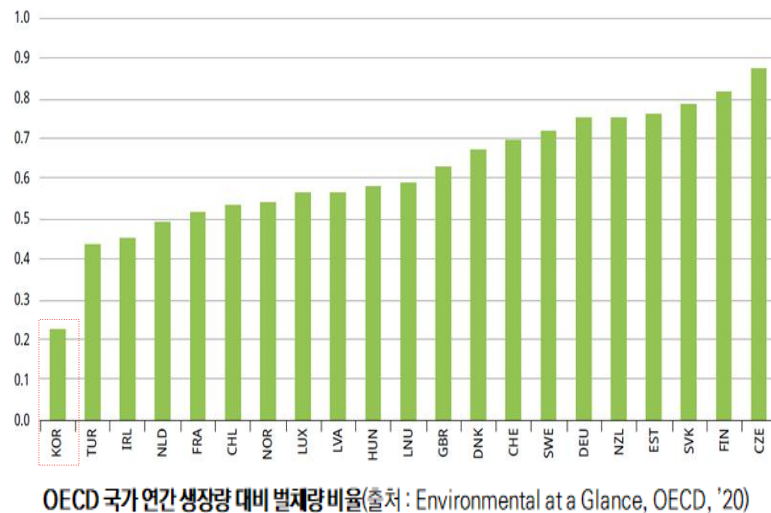
- ① **(진입속도)** 임도가 있으면, 2km 기준으로 4분만에 도착 가능, 반면 임도가 없어도보로 이동할 경우 약 48분 소요됨 → 약 12배 차이 발생
 * (임도) 산불진화임도 30km/h (도보) 숲길 기준 2.51km/h
- ② **(장비수송)** 임도로 진화 장비(진화차량, 등짐펌프 등)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운송할 수 있으나 임도가 없으면 인력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음
 * 장비 예 : 기계화시스템(펌프 34kg, 100m 호스릴 30kg), 등짐펌프 15kg 등
- ③ **(야간진화)** 임도가 있으면 야간 진화 효율이 크게 향상(약 5배)
 * (야간진화율) '23년 합천 산불(임도 有, 82% 상승) VS 하동 산불(임도 無, 17% 상승)
- ④ **(산불확산 저지)** 일부 산불 환경에서 임도는 방화선 기능 수행
 * 산지경사 25°~45°, 풍속 1~4.5m/s, 임도 폭 6m에서 가장 강력한 차단 기능 발휘
- ⑤ **(피해감소)** 임도로 진화자원 투입시, 산불확산 예측보다 최대 1/3 피해면적 감소

자료: 산림청('23년), 한국산불방지협회('23년), 북경임업대학학부('20년), 한국산림휴양학회('17년)

현재 목재생산이 가능한 31~50년생 나무는 전체 산림면적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나, 임도 기반시설이 없어 목재를 자원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앞으로도 수확기에 도래한 나무가 증가함에 따라 목재 생산 등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 확충이 시급함.



또한 우리나라 ha당 축적(나무의 양)은 165m³으로 OECD 평균인 117m³에 비해 높지만, 연간 성장량(나무가 매년 자라는 양) 대비 벌채량은 약 20%에 불과(OECD 국가의 1/2~1/3 수준에 불과한 실정)하므로 기반시설인 임도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제정안은 현재 임도 관련 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임도의 설치 근거, 타당성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 설계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고, 시행규칙과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부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며,

임도의 노선 지정, 인허가 등의 의제, 토지의 수용·사용, 통행금지 및 임도에서의 행위 제한과 위반 시 처분, 임도협회의 설립 등 임도의 운영에 관한 개선 사항을 보완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임도의 설치·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2.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현재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일부 조항²⁾에만 법적 근거를 두고 설치·관리되고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임도의 기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임도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림자원의 조성·관리 목적의 「산림자원법」뿐만 아니라, 산불의 예방·진화 및 산림보호 목적의 「산림보호법」³⁾, 지역균형발전 도모 목적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⁴⁾등 여러 법률의 목적과 연관되어 있음.

또한, 「산림자원법」에 따른 조림, 숲가꾸기 등의 사업과 토목·시설의 설치 등 임도의 사업이 그 성격이 다르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산림자원법」에서 분법하여 독립적으로 임도의 설치와 관리를 위한 제정법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임.

농업 분야는 이미 농업 활동의 기반시설인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등을 위해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제정(1991.12.14.)되어 운영되고 있는

-
- 2) 「산림자원법」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3) 「산림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豫察)·방제(防除)하며 산불을 예방·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복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4) 「임업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점을 고려해 보면, 임업 분야에 있어서 임업 활동의 기반시설인 임도의 설치와 관리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해 임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또한, 1968년부터 설치가 시작된 임도는 2024년말 현재 26,785km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전국 단위의 기본계획인 ‘전국임도기본계획’이 현재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2021~2030년, 10개년 계획)까지 수립되어 시행 중에 있음.

하지만, 기본계획의 근거가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세부 규정들이 산림청 훈령(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임도설치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임도계획제도의 실효성이 약하며, 임도설치 이후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유지·관리도 미흡하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이고, 산림청도 이러한 제정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본칙 6개의 장, 37개의 조 및 부칙 7개의 조로 구성되는데, 본칙은 총칙, 국가임도종합계획의 수립, 임도의 설계 및 설치, 임도의 유지·보수, 보칙 및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참고로 현행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및 훈령 상 임도의 설치·관리 규정 대비 제정안을 비교하면, 제정안에는 임도의 노선 지정, 인허가 등의 의제, 토지 등의 수용·사용, 통행금지 및 행위제한과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손실보상, 한국임도협회 설립,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등 17개의 조가 새로이 추가됨.

제정안의 구성 체계 및 조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 제정안의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 】

구 분	조 제목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목적, 정의, 임도 종류 등	법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국가 등의 책무, 임도의 종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임도의 관할 행정청 등 ※ 목적: 임도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임도의 공익적 기능 증진, 산불예방·진화 등 산림재난에 신속한 대응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 ※ 정의: 임도, 임도사업, 임도사업자, 임도 예정노선, 임도의 타당성 평가, 임도의 부속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
제2장 국가임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임도 계획, 정보 체계 구축 등	국가임도계획, 지역임도계획, 임도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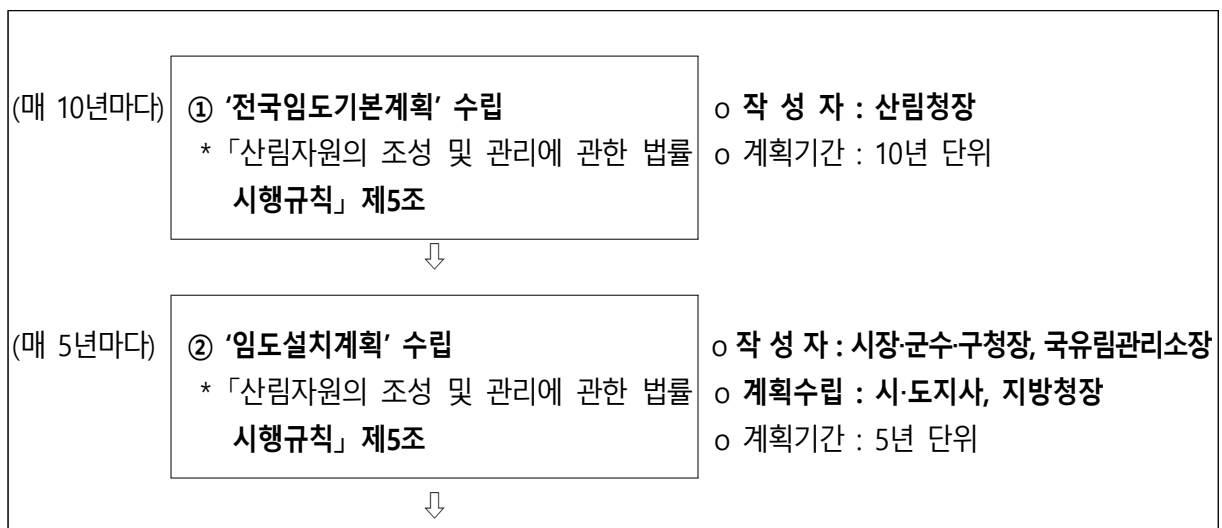
구 분	조 제목	주요 내용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노선선정, 타당성평가 등	임도노선 선정시 고려사항, 타당성평가 실시 및 전문기관 위탁 근거, 임도노선을 선정·고시, 민간임도 설치 절차 등
제15조 및 제16조	허가 의제, 토지 사용·수용	고시된 임도 노선에 대한 입목벌채허가 등의 의제 및 임도 노선에 포함된 토지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사용 등
제3장 임도의 설계 및 설치 등		
제17조 및 제18조	임도 설계·설치 ·관리 등	임도설계·설치 기준, 임도 관리주체 변경 및 운반로 등의 임도화 등
제19조 및 제20조	손실보상, 보상금 등	공무원의 타인 토지 출입 허용, 손실보상 제도, 임도에 포함 되는 토지의 매수 및 교환 필요사항 등
제4장 임도의 유지·보수 등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임도 유지 관리	임도 유지·관리 주체와 임도관리대장의 작성방법,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임도표시에 대한 세부내용 등
제24조 및 제25조	임도 통행금지, 행위제한 등	임도 파손 및 산림재난이 우려되는 경우에 통행금지 및 차량 운행 제한, 임도 예정지 내 물건 적치 제한행위 등
제26조 및 제27조	위반자 조치, 손실보상 등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공용 부담 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등
제5장 보칙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보조금, 포상금, 임도협회 설립, 기술개발 등	임도설치보조금 반환, 포상금 지급, 임도의 국제협력·기술개발 등의 세부사항, 한국임도협회의 설립과 산림청장 권한의 위임 등
제6장 벌칙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벌칙·과태료 기준	임도 파손·무단출입에 대한 벌칙·과태료 부과기준

4. 제정안의 총괄적 검토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에 따라, 현행 임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림자원법」의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⁵⁾이 함께 발의되어 있음.

현행 임도 제도는 「산림자원법」 제2조(정의), 제9조(산림관리기반 시설의 설치 등) 및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에서 임도의 설치 근거, 타당성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 설계 의무, 산림(임도)사업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시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과 「임도설치규정」(산림청 훈령)에서 임도의 종류 및 범위 등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는 체계로 이루어짐.

【 임도 조성사업 추진 흐름도 】



5) 의안번호 제2207235호

(전년 6월말)	③ 노선 선정(신설임도)	○ 선정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 '임도설치계획'에 반영된 개소에 한함
	↓	
(전년 7월말)	④ 타당성 평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 평가주체 : 시·도지사, 지방청장 - 평가기준 :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 - 평가위원 : 민간 전문가 등 5명 이상 - 평가방법 : 점수 70점 이상 타당성 있는 것으로 평가
	↓	
(설계 전)	⑤ 산주 동의(사유림)	○ 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	
(연 중)	⑥ 설계 → 시공(감리) → 준공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5조, 제20조, 제22조	○ 시행주체 - (지방임도) 시·도 / 시·군·구 - (국가임도) 지방청 / 국유림관리소
	↓	
(익년 5월말) (12월말까지)	⑦ 평 가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 지 자 체 : 정부 업무평가(정부 합동평가) ○ 소속기관 : 산림청 → 지방청 → 관리소

임도 제도를 규율하는 새로운 제정법 추진에 따라 「산림자원법」의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제정안 제2조제1호 “임도의 정의”를 인용하여 「산림자원법」 제2조제1호 “산림의 범위”에 임도가 포함되도록 개정함(안 제2조제1호 라목 개정).

둘째,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의 추진에 따라 「산림자원법」에 있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임도 근거 조문을 정비함(안 제9조 삭제).

셋째, 「산림자원법」에 있는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조문에서 산림(임도)관리기반시설을 삭제함(안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안 제65조제1항제1호 삭제).

「산림자원법」 개정안은 제정법 추진에 따라 임도와 관련된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여 임도 관련 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조문의 분리·이관 시 임도에 관한 사항의 단순한 삭제뿐만 아니라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제정안의 정의를 인용하여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안 제2조제1호라목) 제정안과의 체계정당성을 갖추려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제정안과의 관계에서 「산림자원법」 개정안은 안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중 임도와 관련한 제1호를 삭제하고,

현행	개정안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① ----- ----- ----- -----

하는 바에 따라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이하 “산림사업보조금”이라 한다)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u>조성 또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u>를 끝낸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u>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한 산림</u> 2. (생략) ② (생략)	----- ----- ----- ----- ----- -----, ----- <u>조성을</u>----- ----- -----. <u><삭 제></u>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산림사업보조금과 관련된 같은 법 제64조(자금지원)를 제정안에서 신설[안 제28조(자금지원) 및 제29조(임도사업보조금의 반환)]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8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도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해당 임야와 입목을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입목은 그 가격을 미리 평가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입목의 가격평가 및 담보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임도사업보조금의 반환) ① 임도가 설치된 산림을 임도 설치를 위한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이하 “임도사업보조금”이라 한다)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임도의 설치를 끝낸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도사업보조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산림자원법」 제65조는 제2항에서 ‘산림청장 등은 제1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산림사업보조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⁶⁾ 그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같은 법 제65조의2(자금지원의 제한)는 ‘제65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등을 제64조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⁷⁾

따라서 제정안은 안 제28조(자금지원) 및 제29조(임도사업보조금의 반환)뿐 아니라 ‘자금지원의 제한’에 관한 조문도 함께 신설하여 임도사업과 관련한 자금지원, 보조금 반환 및 자금지원의 제한이 「산림자원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자금지원의 제한)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제64조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65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법」에 따른 산림사업보조금 관련 조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안 제30조(자금지원의 제한)를 신설할 경우 제정안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는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로 수정하고 해당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도 인용조항을 수정하여야 할 것임.

IV. 주요 조문별 검토

1. 목적규정

제정안은 이 법은 임도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임도의 공익적 기능 증진, 산불예방·진화 등 산림재난에 신속한 대응과 국가의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안 제1조).

현행 「산림자원법」의 목적은 산림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은 이와 차별화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적합한 내용으로 목적을 규정하여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임도의 공익적 기능 증진, 산불예방·진화 등 산림재난에 신속한 대응 및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새로운 법 제정의 이유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산림자원법」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임도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임도의 공익적 기능 증진, 산불예방·진화 등 산림재난에 신속한 대응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규정은 입법의 취지와 핵심 사항을 종합적·포괄적으로 표현하여 해당 법률의 각 조항의 운용과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함.

목적규정의 규정방식은 ① 입법목적을 밝히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함께 기술하는 방식, ②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먼저 열거하면서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기술하는 방식, ③ 입법목적만을 기술하는 방식, ④ 특정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기술하는 방식 등이 있으며, 제정안은 ②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먼저 열거하고 입법목적 4가지(산림의 생산기반 확립, 임도의 공익적 기능 증진, 산림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지역균형발전)를 기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제정안은 4가지 입법목적(편의상 입법목적 4가지를 각각 A, B, C, D로 표현한다)을 열거함에 있어서 A와 B, C와 D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바, 어법에 맞추어 A, B, C 및 D의 형태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정의규정

제정안은 제2조에서 ‘임도’, ‘임도사업’, ‘임도사업자’, ‘임도 예정노선’, ‘임도의 타당성평가’ 및 ‘임도의 부속물’을 정의하고 있음(안 제2조).

「산림자원법」 제2조제1호라목 「임도설치규정」 제2조	제 정 안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임도(林道)”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경영, 산림재난 예방·대응 및 피해복구의 신속한 대응, 이동 및 접근, 산림휴양·레포츠 등을 위해 산림에 설치한 도로와 그 부속물을 말한다.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숲·생활숲·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임도사업”이란 임도와 관련한 조사·평가·설계·설치 및 유지·보수 등 임도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유림 소유주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임도사업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로서 제2호의 임도사업에 참여하는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예정노선”이란 당해 연도 임도노선으로 확정되기 전의 계획노선을 말한다.	“임도 예정노선”이란 임도의 설치를 위하여 노선을 확정하기 전의 계획노선을 말한다.
“임도의 타당성평가”란 임도설치 예정노선을 대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임도의 타당성평가”란 임도 예정노선을 대상으로 산림의 지리적·환경적 여건, 필요성 및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도 설치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임도의 부속물”이란 임도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임도 통행의 확보, 그 밖에 임도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임도의 원표, 이정표, 거리표주, 경계표주 나. 임도 표지판, 가드레일, 반사경 등 통행 안전 시설 다. 임도에 연결하는 간이주차장 또는 다목적 공간 라. 임도방호 울타리, 가로수 등 임도관리 기관이 설치한 시설 마. 토사유출·낙석방지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바. 임도 이용자를 위한 간이휴게시설, 간이운동시설 등 편의시설 사. 기타 테마임도·레포츠임도의 기능 향상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임도관리 기관이 설치한 시설	“임도의 부속물”이란 임도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임도 통행의 확보, 그 밖에 임도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임도표지, 임도안내, 방향안내, 거리안내, 경계표지 등 임도 안내시설 나. 임도 안전표지판, 가드레일, 반사경 등 통행안전 시설 다. 임도에 연결하는 간이주차장 또는 다목적 공간 시설 라. 임도차단기, 임도방호 울타리 등 임도관리 시설 마. 토사유출·낙석방지 등 재해방지 시설 바. 그 밖에 임도의 기능향상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

* 이외에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실시설계, 토공, 토공사비, 구조개량, 시공감리, 감리자, 감리원, 테마임도, 임도관리단 등을 정의하고 있음.

「산림자원법」 및 「임도설치규정」에서 임도사업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제한적으로 제정법에 맞는 내용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함.

이에 제정안은 변화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임도 및 임도사업을 정의하고 신규로 사용되는 임도사업자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신규 도입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의미를

가짐.

정의규정은 해당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여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고, 법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기능을 하므로 그 의미와 법문표현을 세심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음.

따라서 안 제2조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2조제1호 중 “부속물”은 의미가 불명확하고, 안 제2조제6호에서 “임도의 부속물”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하나의 호로 통합하여 안 제2조제6호는 삭제하고 “임도”의 정의에 각 호로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또한, 안 제2조제6호의 “임도의 부속물” 정의가 여러 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시설 간 구분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임도표지, 안전시설, 부대시설, 재해방지시설로 크게 분류하는 등 시설의 종류를 재분류하여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음.

둘째, 안 제2조제1호 중 “이동 및 접근”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도로”는 일반도로와 구분되도록 표현을 정비하며, “산림휴양·레포츠”는 임도의 본질적 기능이 아닌 부수적 기능으로 의미에 혼란을 초래하므로 예시에서 삭제하는 등의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12조(임도의 타당성평가 등)와 안 제21조(임도의 유지·보수)에 규정된 임도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을 안 제2조제3호의 임도사업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안 제2조제3호 중 “참여하는 자 또는 업체”는 “참여하는 자”로 통합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임도사업계획 등의 수립

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역임도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에 관한 사항, 임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임도 예정노선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연차별 임도사업계획을 임도를 설치하는 전년도에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0조).

제 정 안
제8조(국가임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임도의 체계적인 설치·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임도종합계획(이하 “국가임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임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도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국가임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가임도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림청장은 국가임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임도계획에 따라 임도예정지 지정 등을 포함한 관할 지역 산림의 임도계획(이하 “지역임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임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임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역임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소속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지역임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임도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역임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별 임도사업계획(이하 “사업

계획”이라 한다)을 임도를 설치하는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임도계획에 포함된 연도별 사업에 관한 사항
 2. 임도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3. 임도 예정노선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연차별 임도사업계획은 안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임도종합계획(10년 단위, 산림청장)” 및 안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역임도계획(5년 단위,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에 대한 세부적인 연도별 사업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반영한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현행 시행규칙(제5조제3항 및 제4항)과 규정(제11조)에 따라 운영 중인 임도계획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임도사업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임도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8조는 산림청장이 수립하는 국가임도종합계획(10년)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임도계획(5년)에 따라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매년 임도사업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중복해서 수립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안 제10조를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임.⁸⁾

8) 제정안에 대한 타 기관 의견조회 결과, 경상남도는 국가임도종합계획 및 지역임도계획 수립과 함께 매년 임도사업계획을 전년도에 수립하는 것은 중복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둘째, 제정안은 안 제8조(국가임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제1항에서 국가임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4항에서 지역임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문에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임도종합계획과 지역임도계획은 주체와 포함사항이 다르므로 안 제8조 제4항을 ‘지역임도계획의 수립·시행 등’으로 하여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셋째, 제정안은 제5조에서 임도의 종류를 국가임도, 지방임도 및 민간임도로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안 제6조에서 임도의 관할 행정청을 규정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안 제8조의 ‘국가임도종합계획’ 명칭의 경우 국가임도에 한정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법률해석의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전국임도종합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4. 임도의 타당성평가

제정안은 산림청장 등이 임도 예정노선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임도의 타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타당성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2조).

제 정 안
제12조(임도의 타당성평가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선정한 임도 예정노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임도의 타당성평가(이하 “타당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타당성평가의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자원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⁹⁾ 산림청장, 시·도지사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도 타당성평가 실시를 위한 고려사항과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¹⁰⁾ 임도 타당성평가의 실시 및 대상 시설, 평가위원회 구성, 실시 방법 등을 정하고 있으며, 「임도설치규정」 제7조에서는¹¹⁾ 평가위원의 위촉 및 위원 수, 민간임도의 평가위원 운영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현행 임도 타당성 평가제도는 산림청장 등의 직접수행 방식으로 임도 타당성 평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수행하는 법적 근거가 없음.

또한, 일회성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목측(먼 거리에서 눈으로 관측)에 따른 편의적 평가로 임도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태계 영향 등을 반영하기가 어려움으로 사전에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등)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하여야 하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제5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시설로 한다.

②산림관리기반시설 타당성평가의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11)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임도의 타당성평가등) ① 임도의 타당성평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노선을 대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타당성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1. 대학에서 임학, 산림토목학, 수자원개발, 환경, 토질 또는 그 기초분야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자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2. 산림공학기술자 기술특급 또는 기술고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3. 산림과 관련된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4. 임도설치 대상지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주민대표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4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지역주민대표는 지역별로 1명 이상을 일시적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④ 민간임도의 경우 평가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거처 견고하고 친환경적이고 튼튼한 임도의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파악됨.

이에 제정안은 임도 타당성평가 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관 제도 운영 및 사업의 위탁 근거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업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타당성평가를 추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안 제13조(임도의 노선 지정 등)제1항에서는 ‘제12조에 따라 타당성평가가 완료된 임도’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타당성평가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노선을 모두 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타당성평가가 적합한’ 경우에만 지정·추진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안 제14조(민간임도의 노선 선정 등)제2항에서는 민간임도의 설치 예정계획을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타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타당성평가 실시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 제12조(임도의 타당성평가 등)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도 예정노선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임도의 타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4조제2항 후단은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타당성평가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14조제2항 중 “제12조”는 “제12조제1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5. 토지 등의 수용·사용

제정안은 산림청장 등이 임도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임도 노선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토지의 수용·사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 보상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임도노선의 지정·고시는 같은 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안 제16조).

제 정 안
제16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도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임도노선 구역 안에 포함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임도노선의 지정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림 내에 임도를 설치하는 경우 「산림 자원법」 제9조12)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를 설치할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산림관리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채산주가 대다수인 현실에서 임도에
정노선 내 사유림 산주의 동의를 모두 받기는 어려워 임도사업 추진
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임도노선을 변경·우회하여 임도를 설치
하는 실정임.¹³⁾¹⁴⁾

【 최근 5년간 국가임도에 포함된 사유림 매수 실적 】 15)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임도설치 개소(개)		3,029	509	546	636	612	726
임도설치 길이(km)		4,775	804	827	1,004	1,029	1,111
토지보상	계획면적(ha)	67.5	13.5	13.5	13.5	13.5	13.5
	예산(백만원)	6,750	1,350	1,350	1,350	1,350	1,350
토지보상	실행면적(ha)	4.9	0.3	1.7	1.0	1.6	0.3
	집행(백만원)	512	11	129	92	252	28

이에 개정안은 임도노선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사용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지닌 임도의
효율적인 확대 및 임도설치의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토지 등의 공용수용은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
하는 등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한정하고 있고, 국가·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⁶⁾

13) 사유림 임도개설 및 사유림의 단위면적(ha)당 임도밀도는 국유림에 74.4% 수준임.

* 임도밀도 현황 : 국유림 5.50m/ha, 사유림 3.81m/ha

14) 우리나라 산주 2,172천명의 56%(1,213천명)가 부채산주임.

15) 임도 편입지에 대해 매수사업을 추진 중이나, 소유자 부동의에 따라 매수 실적 저조함.

국토교통부는 임도설치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으로서 현행 토지보상법으로도 수용·사용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대해 산림청은 임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 등의 수용·사용’ 조문을 제정법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12. 29.>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변경 또는 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임도에서의 행위제한

제정안은 지정된 임도노선 또는 설치된 임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물 설치나 물건을 적치하여 통행을 방해하거나, 임도의 파손·피해를 입히고, 주의사항 및 위험표시 안내판을 파손하거나 옮기는 등 임도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25조).

제 정 안
제25조(임도에서의 행위제한) 누구든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임도노선 또는 설치된 임도에서는 임도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임도를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주의사항 및 위험표시 안내판을 파손하거나 옮기는 행위 4. 그 밖에 임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행위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재는 임도시설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 등 유사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하고 있으므로,¹⁷⁾ 제정안은 관련 규정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임도의 유지·관리와 지속적인 사용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17) 임도는 「산림자원법」 제2조제1호 및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산림(산지)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림청은 임도 내에서 불법 시설물을 철거 및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명령 및 처벌은 「산지관리법」 제44조, 입산 통제 등의 조치 등은 「산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 제25조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25조제4호는 ‘그 밖에 임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행위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안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35조(벌칙)에 위반 시 처벌조항을 두어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제25조 제4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제정안 제37조(과태료)는 구체적인 의무부과 없이 ‘임도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또는 ‘임도에서 화기, 인화 물질 또는 발화 물질을 지니고 통행하거나 운행한 자’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의무위반 행위에 부과되는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에 맞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를 안 제25조 각 호에 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7. 임도사업의 국제협력 및 기술개발 등

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도 기술·정보에 관한 국제 교류, 국제 전문인력 양성 및 공동 연구·개발 등 임도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임도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31조).

제 정 안
제31조(임도사업의 국제협력 및 기술개발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도 기술·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국제 전문인력 양성 및 공동 연구·개발 등 임도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임도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산림자원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자원의 공익기능 증진 등과 관련된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정안은 임도 설치 확충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임도 기술과 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국제 전문인력 양성 및 공동 연구·개발 등 임도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세부

적이고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제정안은 제31조제1항에서 임도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국가로 하여금 임도 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자원법」 제34조제1항에서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정안 제3조제1항에서도 임도의 설치,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시책을 추진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안 제31조제2항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안 제31조제2항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연구·개발과 교육·홍보 시책의 수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며, 산림청도 의무화보다 타당성·실현 가능성·내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한 후에 실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8. 한국임도협회의 설립

제정안은 임도사업자가 임도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32조).

제 정 안
제32조(한국임도협회의 설립) ① 임도사업자는 임도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임도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도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2. 임도사업의 진흥을 위한 민간협력 추진 3. 임도사업 관련 제도 연구 및 개선 건의 4. 임도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임도사업자로 조직된 별도의 협회는 없으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13조18)에 따라 한국산림기술인회를

18)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한국산림기술인회) ①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과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산림기술인회(이하 “기술인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인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인회의 업무에 드는 경비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술인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기술인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설립하여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과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가 있음.

또한, 임도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의 임도사업자 또는 산림사업 법인이 개별적으로 임도사업에 참여할 경우 계약사항 이행, 시공 품질 및 새로운 기술 도입, 임도 설치 후에 사후관리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제정안은 임도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설립을 통해 임도 분야의 발전과 함께 임도사업의 품질향상, 임도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시공 능력 및 입찰 참가 자격 평가와 자정능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특수법인은 특정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률에서 직접 설립을 강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전형적이지만, 최근에는 제정안과 같이 「민법」이나 「상법」 외의 개별법에서 사업자가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정한 목적의 법인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규정만 두고, 실제 설립여부는 민간의 의사에 맡기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¹⁹⁾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술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① 수산물유통사업자는 수산물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산물 유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특수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설립 근거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데, 제정안에 따른 한국임도협회의 사업 범위는 임도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민간협력 추진, 제도 연구 및 개선 건의,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은 제31조에서 임도사업과 관련해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임도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임도사업의 품질향상과 시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임도사업의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회원사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므로, 협회의 업무 수행 범위에 ‘임도사업의 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²⁰⁾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 「도로법」

제105조(도로협회) ①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로 분야 기술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2. 도로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홍보·교육

3.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4. 도로에 관한 연구·개발 및 사업관리

5. 국제 도로 관련 단체와의 협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9. 벌칙

제정안은 안 제25조(임도에서의 행위제한)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안 제24조 및 제23조 등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35조 및 제37조).

제 정 안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자 2. 제25조제2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도를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힌 자 3. 제25조제3호의 주의사항 및 위험표시 안내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옮기거나 파손한 자 제37조(과태료) 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행이 금지된 임도를 통행하거나 제한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임도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임도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자 2. 임도에 화기, 인화 물질 또는 발화 물질을 지니고 통행하거나 운행한 자 ④ 제23조의 임도의 표시(주의사항 및 위험표시 안내판은 제외한다)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징수한다.

현행 「산림자원법」은 임도에 구조물 설치 또는 물건의 적치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임도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산지관리법」 또는 「산림보호법」 상 유사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제정안은 통행의 금지 또는 행위 제한 등의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을 통해 임도의 불법 통행 및 훼손 행위를 최소화하고 임도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호를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안 제37조제2항과 제3항에서 ‘임도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임도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자’와 ‘임도에 화기, 인화 물질 또는 발화 물질을 지니고 통행하거나 운행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벌칙은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있거나 실체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경우 제한적으로 규정하되, 법의 목적·침해법익 등에 따라 벌칙이나 과태료를 선택하여 규정하는 것임.

그러나 구체적인 의무부과 없이 해당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은 의무위반 행위에 부과되는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에 맞지 않으므로 실체규정에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를 먼저 규정한 후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 제35조제3호는 “제25조제3호의 주의사항 및 위험표시 안내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옮기거나 파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산림보호법」은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²¹⁾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벌칙의 종류와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21) 「산림보호법」

제57조(과태료) ② 제45조의8제10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⑨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누구든지 제9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부칙

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임도계획 및 지역임도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와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다른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부칙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임도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 임도기본계획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가임도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역임도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한 임도 설치계획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임도계획으로 본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 제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을 “같은 법 제12조”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를 “임도의 타당성평가”로 한다.

③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3항제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을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정안은 국가 또는 지역임도계획 수립, 처분, 벌칙 및 과태료의 경우 구법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나 효력을 시행일 이후까지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그러나 제정안 제13조에 따른 임도의 노선 지정의 경우에도 이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임도를 이 법에 따른 노선 지정이 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둬으로써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423

참고 1

「산림자원법 등」 - 「임도설치법안」 비교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착훈령 등 (현행)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신규
「법」 제2조(정의)제1호라목	제2조(정의)
「법」 제2조의2(산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신규
「임도설치 규정」 제3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임도설치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칙」 제5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제1항	제6조(임도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법」 제5조(산림의 관할 행정청)	제7조(임도의 관할 행정청 등)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	제2장 국가임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규칙」 제5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제3항	제8조(국가임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임도설치 규정」 제27조(임도관리대장)제2항	제9조(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임도설치 규정」 제11조(임도사업계획의 확정)	제10조(임도사업계획의 수립)
「임도설치 규정」 제5조(임도설치계획 작성) 제2항·제4항	제11조(임도 예정노선의 선정 등)
「법」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2항·제3항 「규칙」 제4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등) 「임도설치 규정」 제7조(임도의 타당성평가 등)	제12조(임도의 타당성평가 등)
	제13조(임도의 노선 지정 등) * 신규
	제14조(민간임도의 노선 선정 등) * 신규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 신규 「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제1항제4호에서 일부 운영]
	제16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 신규
	제3장 임도의 설계 및 설치 등
「법」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1항·제4항 및 제5항 「규칙」 제5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제1항	제17조(임도의 설계 및 설치 등)
「임도설치 규정」 제25조(민간임도의 유지관리)	제18조(임도의 관리 등)
	제19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신규
	제20조(손실보상 등) * 신규
	제4장 임도의 유지·보수 등
「규칙」 제5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제6항 「임도설치 규정」 제26조(임도의 보수·관리)	제21조(임도의 유지·보수)
「규칙」 제5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제6항 「임도설치 규정」 제25조(민간임도의 유지관리)	제22조(민간임도의 유지관리)
「임도설치 규정」 제26조(임도의 보수 · 관리)제5항·제6항	제23조(임도의 표시)
	제24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 신규
	제25조(임도에서의 행위제한) * 신규
	제26조(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신규
	제27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 신규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법」 제64조(자금지원)	제28조(자금지원)
「법」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제29조(임도사업보조금의 반환)
	제30조(포상금의 지급) * 신규
	제31조(임도사업의 국제협력 및 기술개발 등) * 신규
	제32조(한국임도협회의 설립) * 신규
「법」 제7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 법 」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6장 벌칙
	제35조(벌칙) * 신규
	제36조(양벌규정)
	제37조(과태료) * 신규